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8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백호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5월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9년 6월 30일자로 3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금년 1월 22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소년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과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7년간 안정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하여,
-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
- 지난 3년간 강북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는 참·빛의 교육이념과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세계적인 지성인의 양성을 주요 기능으로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34년 설립된 법인임.
-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시설을 안정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시설(채움빌)을 활용하여 주변 자연 환경을 접목한 전문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네이처드림센터) 및 4차 산업 등 변화하는 교육사회 정책을 반영한 증강현실, 코딩 등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강북청소년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

○ 3년간 주요 실적

- 이용인원

사업구분	이용 인원	청소년 이용인원	청소년 이용률
2016년	531,670명	352,510명	66%
2017년	564,244명	371,882명	66%
2018년	662,027명	466,352명	70%

- 지역·학교연계 실적

구분	연도	기관	프로그램
학교연계	2016	33	25
	2017	86	66
	2018	71	49
지역사회연계	2016	153	50
	2017	141	54
	2018	85	26

- 주요 우수사항

- ▶ 2016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 2017년 교육부 지역특성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장려상 수상
- ▶ 2017년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우수 등급
- ▶ 임흥길 대장과 함께 하는 희망원정대를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

3) 위탁 사무의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 개관일자 : 2001.03.10.
- 시설규모 : 부지 6,801 m^2 , 연면적 6,409 m^2 (지하 2층, 지상 3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음악실,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소요예산 : 5,479백만원('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074백만원, 물건비 717백만원, 경상이전 219백만원, 자본지출 701백만원, 사업비 2,260백만원, 사업외 지출 등 기타 508백만원

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총괄 내역

-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계약¹⁾ 4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²⁾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조례」는 미동의 민간위탁에 대해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금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이 제출되었음.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2019년예산 (백만원)	위탁시설 개요
597	시립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	재계약	2,939	- 현 위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연맹 - 소재지 :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 개관일자 : 2003.05.01 - 시설규모 : 부지 2,899㎡, 연면적 4,888㎡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598	시립 강북 청소년	재계약	5,479	- 현 위탁기관 :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소재지 : 강북구 4.19로 74 - 개관일자 : 2001.03.10.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위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위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2019년예산 (백만원)	위탁시설 개요
	수련관			- 시설규모 : 부지 6,801㎡, 연면적 6,409㎡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음악실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599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재계약	3,034	- 현 수탁기관 :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부지 5,100㎡, 총면적 5,260㎡ - 지원시설 : 공연장, 강의실, 청소년카페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600	시립 보라매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센터	재계약	611	- 현 수탁기관 :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203㎡ - 지원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 현재까지 평생교육국의 12개의 위탁시설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9년 6개소, 2020년 6개소가 계약만료될 예정에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최초위탁일	시작일	종료일
1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2006-4-17	2016-7-1	2019-6-30
2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06-7-1	2016-7-1	2019-6-30
3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09-2-12	2016-7-1	2019-6-30
4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2000-11-1	2016-7-1	2019-6-30
5	이동쉼터(서북)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04-4-12	2018-1-1	2019-12-31
6	이동쉼터(서남)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04-4-12	2018-1-1	2019-12-31
7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재)대산문화재단	2000-5-1	2017-4-1	2020-3-31
8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2012-3-28	2017-4-1	2020-3-31
9	서울시 청소년 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1-12-2	2017-7-1	2020-6-30
10	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2-7-1	2017-7-1	2020-6-30
11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2012-7-1	2015-7-1	2020-6-30
12	드림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1-12-2	2017-7-1	2020-6-30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³⁾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민간위탁’과 유사한 용어의 비교

-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 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대 행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그 업무의 수행만을 맡기는 것

〈 위임·위탁·민간위탁·대행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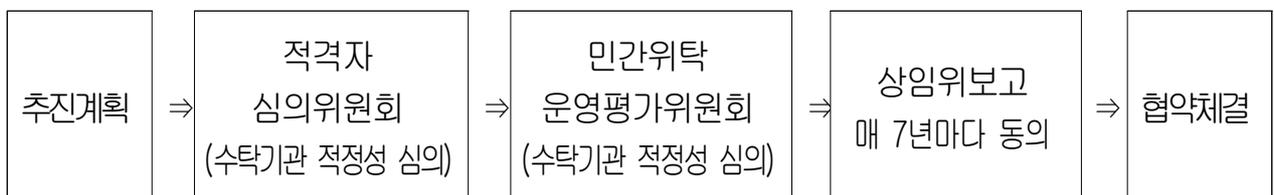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권한 이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임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임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임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탁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탁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이전 없음 -대행기관은 위임 기관의 명의로 업무처리만을 대행 - 권한과 책임이 행정 기관에 있음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기관(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상하관계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보조 기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행정기관의 장 ※ 동급의 행정기관, 지휘·감독 받지 않는 하부기관 · 광역자치단체장→다른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다른 기초 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 ※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 ※ 계측·검측·검사 등 행정 조사 관련 분야에서 널리 사용, 사용료·요금 등의 부과·징수에서 활용

3)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지휘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
사전 승인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임규정 • 사무위임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탁규정 • 사무위탁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탁규정 • 사무위탁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필요한 경우에 규정

- 본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동의 상태의 위탁사무를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각 설립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조례」⁴⁾에 부합한다고 보여짐.

※ 학교장 권한의 휴무확대 및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수련·문화·교류·체험 등의 활동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훈련된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위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성, 능률성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특수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바,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① 동일 수탁법인의 동일 사항 반복 지적, ② 전문성 평가기준의 적정성, ③ 인력운영 합리성, ④ 동일 수탁 법인의 장기 수탁의 적정성, 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율의 타당성, ⑦ 성과평가 항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재위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세부 내용 검토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이하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이하 "광운대학교")와 2년간(2019.7.1.~2021.6.30.)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의 개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 개관일자 : 2001.03.10.
- 시설규모 : 부지 6,801㎡, 연면적 6,409㎡ (지하 2층, 지상 3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음악실,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소요예산 : 5,479백만원(2019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추진현황 >

- 1차 2000.11.01.~2003.10.31. : (재)대화문화아카데미 공개모집
- 2차 2003.11.01.~2006.12.31. : (재)대화문화아카데미 재계약
- 3차 2007.01.01.~2009.12.31.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공개모집
- 4차 2010.01.01.~2011.04.30.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재계약심의
- 5차 2011.05.01.~2014.04.30. :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공개모집
- 6차 2014.05.01.~2016.06.31. :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재계약
- 7차 2016.07.01.~2019.06.30. :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공개모집

- 평생교육국은 광운대학교가 안정되고 투명하게 강북수련관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 등을 통해 재계약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광운대학교가 운영하는 강북수련관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인사규정 미준수(공개채용), 회계관리 부적정(1계좌당 1카드 개설 위반, 1계좌좌 6카드개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미준수, 정기재물조사 기준 미준수, 홍보 관련 계획·실행의 미흡, 민원접수 대장 관리미흡 등이 지적된바 있음.
- 또한 민간위탁 평가결과 총괄표에는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광운대학교가 본 건과 별개로 수탁 운영하는 창동청소년수련관의 지적사항과 유사한바, 수탁법인의 투명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5년 청소년시설 특정감사 결과(창동청소년수련관) 제목 발체
 자격기준 미달자 채용 및 공개경쟁 원치 미준수 등 채용업무 부적정, 직원 및 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이행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계약관련 업무
 처리 소홀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의 평가결과 총괄표 〉

구분	대영역	중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유형	점수	
F0 배0	사업 인프라 (25)	1 조직 및 인력운영	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0.0	5.0	정량	5.0
			1.2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0	정량	4.0
		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2.1 회계관리 적정성	7.0	5.0	정량	2.0
			2.2 사업예산 집행 효율		2.0	정량	1.6
		3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3.1 재산 및 물품관리	8.0	3.0	정량	2.7
			3.2 시설 및 기자재 활용		2.5	정량	2.5
			3.3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가치제고		2.5	정성	2.5

구분	대영역	중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유형	점수
	사업 활동 (10)	1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1.1 중장기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적정성	4.5	2.5	정성	2.0
			1.2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	정성	1.6
		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2.1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도	5.5	2.5	정성	2.5
			2.2 이해 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1.5	정성	0.9
			2.3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1.5	정성	0.9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노력 (15)	1 프로그램 질적수준 제고	1.1 성과목표의 적절성	10.0	5.0	정성
	1.2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5.0		정성	2.0
	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2.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	5.0	정량	5.0
	사용자 만족도(20)	1 만족도 조사	1.1 만족도 조사	20.0	15.0	정성	13.4
		2 만족도 제고 노력	2.1 만족도 제고 노력		5.0	정성/정량	4.0
특 화	사업 성과 (30)	1 프로그램 개발*	1.1 프로그램 개발 적정성	10.0	10.0	정성	10.0
			1.2 프로그램 집행률	5.0	5.0	정량	5.0
		2 프로그램 운영	2.1 청소년 이용률	15.0	10.0	정량	8.5
			2.2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5.0	정성	4.0
합계				100	100	-	84.1

○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재정구조, 사업관리, 지도점검 이행, 만족도 조사시행 여부 등) 청소년 시설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 청소년의 이용률 등)으로만 평가하고, 서울시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누락되어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위탁 효과’를 구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추가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제출된 안건의 시설(건물, 강북구 수유동 535-380 외 5필지) 면적(6,409㎡)과 현 위·수탁계약서상 면적(5,542㎡), 그리고 등기부등본 상 면적(5,667㎡)이 모두 상이한바,

권리관계의 근거가 되는 등기부등본과 위·수탁계약의 위탁시설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 그 위탁관계 및 권리관계가 모호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시설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탁범위와 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평생교육국의 조속한 등기사항 현행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시설 개요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 개관일자 : 2001.03.10.
- 시설규모 : 부지 6,801㎡, **연면적 6,409㎡** (지하 2층, 지상 3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음악실,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 강북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계약서 발췌 >

위탁하여 관리하는 수련관의 재산목록

1.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대 지	6,801㎡	서울특별시

2. 건 물

- 구 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연 면 적 : 5,542.55㎡(전용 : 5,542.55㎡)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의 등기부등본(발체) >

[건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35-380외 5필지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4	2009년4월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35-380, 산19, 563-109, 563-110, 563-111, 535-361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실근콘크리트 콘크리트평지붕 청소년수련시설 지2층 1,304.48㎡ 지1층 1,253.10㎡ 1층 1,520.57㎡ 2층 835.89㎡ 3층 628.51㎡ 옥탑1층 62.56㎡ 옥탑2층 62.56㎡ </div>	지번변경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div> 합계 : 5,667.67㎡

※ 강북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면적이 각각 상이한 이유

등기부등본은 2009.4.20.에 마지막으로 갱신되었으나, 강북청소년수련관은 2015년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체험을 겸한 숙박 수련활동을 가능하도록 ① 생활관을 증축하고, ② 본관 지상 3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건립 >

□ 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건립계획(2014.6.)

- 증축 개요
 - 규 모 : 지상 2층, 약 460㎡ 이상
 - 숙박정원 : 약 100명 이상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
- 리모델링 개요
 - 규 모 : 본관 지상 3층 전체 면적 628.51㎡
 - 숙박정원 : 약 130명 이상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
- 숙박정원 : 최소 230명 이상
 - ※ 건축계획 세부검토결과 편성예산을 고려해 당초 280명에서 230명으로 축소함
- 총사업비 : 20억원(시비 100%) : 14년 사업 예산으로 기 편성됨(2013.12월, 예산결산위원회)
- 사업기간 : 2014. 1 ~ 2015. 9

□ 강북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건립변경계획(2015.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증축부문	별동 460㎡이상(2개층)	별동 900㎡이상(3개층)	증 440㎡
리모델링	본관 3층 628.5㎡	없 음	리모델링 취소
숙박정원	230명(착수보고 200명)	140명	감 90명(착수보고 대비 감 60)
사업비	200백만원	200백만원	-
사업기간	‘14.1~ ’ 15. 9	‘14.1~ ’ 15.12(2년)	현상공모 절차로 3개월 연장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건물 이용현황 〉

구분	시설명	면적(㎡)	용도	정원(명)
지하2층	기계실	341.22	기계실	-
	전기실	130.78	전기실	-
	발전기실	56.75	발전기실	-
	남자탈의실 및 샤워실	97.8	남자탈의실 및 샤워실	-
	수영장	605.79	수영프로그램	100
소계		1,232.34		
지하1층	소극장	310.39	발표회 및 행사	17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94.56	진로상담 및 체험	10
	드럼실	36.21	드럼수업	10
	여자탈의실 및 샤워실	130.76	여자탈의실 및 샤워실	30
	방재실	25.15	통합관제실, 감시실	3
	채움카페	94	청소년 진로체험 카페	30
	구내식당	197.03	식당(스포츠단, 방과후아카데미, 직원)	50
	강사대기실	7.29	수영강사 대기실	3
	안내데스크	11.44	안내 및 접수	2
소계		906.83		
지상1층	난나스포츠단	170.63	난나스포츠단교실(6~7세반)	120
	청소년전용공간(숲)	245.72	동아리실, 독서공간, 밴드, 댄스, PC존, 멀티실	60
	실내인공암벽장	15.96	실내인공암벽 및 사무실	15
	체육관	745.92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인라인 등	100
소계		1,178.23		
지상2층	관장실	27.43	사무 및 회의공간	2
	통합사무실	121.89	통합사무실	30
	방과후교실	82.4	방과후아카데미교실(5~6학년)	40
	음악실	78.03	요가 및 동아리 연습실	15
	피아노실	49.57	피아노교습	20
	강의실	75.1	평생학습실 및 회의	50
	미술실 및 서예실	39.34	미술실 및 서예실	15
소계		473.76		
지상3층	강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97.87	청소년상담 및 상담실	10
	집단상담실	45.1	집단상담 및 회의	30
	미술치료실	17.35	미술치료	5
	놀이치료실	25.8	놀이치료	10
	휘트니스클럽	283.8	헬스프로그램	100
소계		469.92		155
생활관	채움빌	867.38	청소년숙박시설	100
소계		867.38		
전용면적		5,128.46		
공유면적		1,281.47		
총계		6,409.9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⁵⁾는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소관 사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종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06.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출처 : 의안번호 597, 598, 599, 600의 제안이유 발췌

- 또한, 민간위탁 평가에서 재무, 인사, 회계에 지적사항이 집중되어 있고, 각 시설별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에 앞서 행정, 재정, 회계 등의 철저한 규정준수가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에 강력히 요구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는 대규모 단체들로 기본적인 행정처리 능력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나,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사항이 집중적·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바,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이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이러한 거대 청소년단체들은 지난 20여 년간 변하지 않는 서울시의 수탁기관 선발요건에 최적화되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수탁여부를 판가름하는 단체의 경력, 재무, 조직, 자격요건 등을 중요시 여기는바,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의 다양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정단체의 장기수탁을 방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관리상, 행정상 업무를 축소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에 있는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거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시설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0,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98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은 2011.5월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9.06.30.자로 3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금년 1.22.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소년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과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7년간 안정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하여,
- 다.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06.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
- 지난 3년간 강북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는 참·빛의 교육이념과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세계적인 지성인의 양성을 주요 기능으로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34년 설립된 법인임
-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시설을 안정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시설(채움빌)을 활용하여 주변 자연환경을 접목한 전문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네이처드림센터) 및 4차 산업 등 변화하는 교육사회 정책을 반영한 증강현실, 코딩 등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강북청소년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

○ 3년간 주요 실적

- 이용인원

사업구분	이용 인원	청소년 이용인원	청소년 이용률
2016년	531,670명	352,510명	66%
2017년	564,244명	371,882명	66%
2018년	662,027명	466,352명	70%

- 지역·학교연계 실적

구분	연도	기관	프로그램
학교연계	2016	33	25
	2017	86	66
	2018	71	49
지역사회연계	2016	153	50
	2017	141	54
	2018	85	26

- 주요 우수사항

- ▶ 2016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 2017년 교육부 지역특성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장려상 수상
- ▶ 2017년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우수 등급
- ▶ 임흥길 대장과 함께 하는 희망원정대를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

다. 위탁 사무의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 개관일자 : 2001.03.10.
- 시설규모 : 부지 6,801㎡, 연면적 6,409㎡ (지하 2층, 지상 3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음악실,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소요예산 : 5,479백만원('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074백만원, 물건비 717백만원, 경상이전 219백만원, 자본지출 701백만원, 사업비 2,260백만원, 사업외 지출 등 기타 50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2133-4122)